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등 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4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시한 4차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그동안 시정조치를 받고도 우회적인 방법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로 나타났으며, 비상장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특수관계인 부당지원행위도 3차 조사시까지의 1건 468억원에서 4건 1,266억원(지원성거래규모기준)으로 3배 증가하였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부당지원행위로 해외금융기관을 통한 비상장주식 고가매입행위, 벤처기업 창업 관련 인력지원 등이 6건 적발되었으며, 친족독립기업인 금강고려화학의 현대건설 지원, SK글로벌 및 워커힐의 관계회사인 성산개발 지원 건 등 친족독립기업과 모그룹 계열사 간 지원행위 및 관계회사 지원행위도 새롭게 나타났다.

벤처기업을 위장계열사화하는 방법으로 계열

확장하거나 미편입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 등 미편입계열사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분야로의 계열확장, 삼성카드의 조사거부·방해행위, 현대건설 및 현대아산의 공시규정 위반행위 등도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 위반사실의 신문공표와 함께 총 4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거부·방해행위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2.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특히 상습적인 부당지원행위의 차단을 위해 반복적인 위반 등 법 위반이 명백하고 지원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진 현대중공업, 삼성카드, LG상사, SK글로벌 등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고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반복위반행위 6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원을 가중하였으며, '99년 12월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1건당 1억원을 감면해 주었으며, 8개 위장계열사 중 계열회사 요건을 해소하지 않은 3개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편입토록 조치하였다.

▣ 기업집단별 부당내부거래 규모 ▣

(단위 : 개사, 억원)

집단명	지원업체 수	수혜업체 수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금액
현대	7	7	5,654	441
삼성	8	5	3,311	356
L G	10	4	5,042	184
S K	8	4	10,631	281
계	32	20	2조 4,638	1,262

* 지원업체인 특수관계인 : 현대 1명, 삼성 1명, LG 33명

▣ 기업집단별·회사별 과징금 및 과태료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업집단	과징금	과태료	총 계
현대	현대증권(5,688), 현대택배(4,470), 현대중공업(3,186), 현대통신운용(455), 현대전자(233), 현대상선(75), 금강고려화학(14) - 7개사	〈소계〉 14,121	현대건설(100) 현대아산(100) 14,321
삼성	삼성카드(4,473), 삼성통신운용(880), 삼성캐피탈(4,375), 삼성물산(13), 삼성SDS(8), 삼성생명보험(219), 삼성테크원(9) - 7개사	9,977	삼성카드(20) 9,997
LG	LG화학(7,940), LG텔레콤(2,425), LG상사(395), LG전자(726), LG산전(300), 희성전선(270), LG칼텍스정유(145), LG정밀(60) - 8개사	12,261	- 12,261
SK	SK글로벌(3,329), 위커힐(2,189), SK건설(301), SK(주)(217), SK가스(800), SK에버텍(1,000) - 6개사	7,836	- 7,836
계 - 28개사	44,195	220	44,415

광고실증에관한운영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2일, 광고실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정의 미비 및 불명확성 등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광고실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고실증에관한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실증자료 요청대상이 되는 표시·광고로 매체와 지역적 확산도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한정하였고, 둘째, 포괄

적이던 열람·공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열람·공개의 대상을 법에 위배되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한 표시·광고로 규정하였으며,셋째, 열람내용과 공개내용을 분리 규정하여 열람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제출한 모든 실증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공개양식을 마련하였다.

* 동 지침은 본 지의 '부록' (73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지주회사관련규정에관한해석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4월 지주회사 허용 이후 최근 지주회사 설립이 활발해진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그동안의 질의회신 내용 및 위원회 처리결과 등을 토대로 「지주회사관련규정에관한해석지침」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동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측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및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의 주식(지분 포함)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법 제2조제1호의2, 시행령 제2조제2항),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법 제2조제1호의3)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어떤 회사가 자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지침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회사(다만, 지주회사(자회사 포함)의 보유지분보다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이 더 큰 회사는 제외)로 규정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임원선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상 영향력 행사 등 사실상의 지배여부가 아닌 지분보유를 기준으로 자회사 여부를 판단케 한 것이다.

◆ 지주회사의 성립시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설립 또는 전환되는 시점부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자회사외의 지배목적 주식소유 금지 등 각종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법 제8조의2).

이에 따라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시점을 동 지침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이 있었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날로 규정하였다.

◆ 지주회사의 소유가 금지되는 지배목적 주식소유의 범위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법 제8조의2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조의2)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소유가 금지되는 지배목적 주식의 범위를 「계열회사의 주식」으로 동 지침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지주회사의 소유가 허용되는 손자회사의 범위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즉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소유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당

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법 제8조의2제2항, 시행령 제15조의4 제1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지침에서 지주회사의 소유가 허용되는 손자회사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와 당해 자회사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거래처, 거래제품, 거래규모 등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 동 지침은 본 지의 '부록' (78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3일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심의 · 의결하였다.

공정위 「고시」로 제정되는 동 부과기준은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해당기업에게 부과한 시정조치를 기업이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부과기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시 기준이 되는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 영업양수가액, 합병가액, 인수하는 채무액” 등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조치가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가 위반된 경우

에도 이를 법 위반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의 이행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되, 시정조치를 90일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90일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주식취득 · 합작회사 신설 · 합병 · 영업양수의 경우 불이행 기간의 1일당 이행강제금의 부과비율을 기업결합금액의 2/10,000로 하되, 금액의 크기에 따라 2/20,000까지 체감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시정조치를 받은 자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계산된 이행강제금을 법상 한도인 3/10,000 이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 기준은 본 지의 '부록' (81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 등 관련 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2일, 중고자동차매매알선시장에서 수수료의 상한선(매매가액의 2% 이내)을 두는 현행 제도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말에 폐지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자동차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게 된 것은 동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최고가격 규제이므로 기준가 이하에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서비스 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가격인 2%를 받는 등 사실상 '가격카르텔'을 조장하고 있으며, 사업자 수의 대폭적인 증가('96년 1,291개소 → '99년 2,953개소)와 자동차경매장의 잇단 개설, 인터넷을 통한 매매알선 등 중고자동차매매알선시장이 대형화·다양화되어 소비자들도 매매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수수료의 상한선 설정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공정위는 동 수수료가 폐지됨으로써 가격경

쟁이 촉진되고 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그동안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어왔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키로 하였다. 우선, 2001년 상반기중에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동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기관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와 사업자의 예측을 어렵게 하던 문제점을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 등록을 위해서 사업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토록 하던 것을 등록신청서에 통합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며, 약관신고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서 표준운송약관을 작성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 또는 운송주선실적 보고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2000년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0년 11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7개사가 신규편입되고, 19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0년 12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000년 11월 1일 585개사에서 573개사로 감소하였다.

계열제외된 19개사 중 18개사는 기업집단 「에쓰-오일」과 「동아」의 소속회사로 각각 2000년 11월 22일 및 11월 29일자로 대규모기업집

단에서 지정제외되었다. 공정위는 「에쓰-오일」(구 쌍용정유)의 계열회사였던 범아석유(주)가 청산종결됨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에쓰-오일(주) 1개 회사만이 남게 되었으며, 「동아」의 경우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동아건설산업(주) 및 대한통운(주)의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92.9%를 차지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회사들의 자산

총액이 4,594억원에 불과해 경제력 집중에의 영향이 미미한 점을 감안,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하였다.

이로써 2000년 4월 지정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은 지난 7월 제외된 「(주)대우」와 금번 「에쓰-오일」 및 「동아」의 지정제외로 27개 기업집단만 남게 되었다.

◆ 2000년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0. 11. 1	편 입				제 외						증 감	2000. 12.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지정 제외	합병	매각	청산	기타	계		
전 체	585	4	3	-	7	18	-	-	-	1	19	△12	573
1~4대	173	1	1	-	2	-	-	-	-	-	-	2	175
5~30대	412	3	2	-	5	18	-	-	-	1	19	△14	398

◆ 2000년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 편입 : 7개사(회사설립 4, 주식취득 3)

◎ 제외 : 19개사(지정제외 18, 기타 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증 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에 스 케 이	빌플러스(주)	온라인정보처리업	회사설립 (100%)	-	-	-	2
	이노에스(주)	무선통신관련장비 개발 및 판매	주식취득 (0%→70%)				
금 호	-	-	-	철마개발(주)	터널축조공사	지분율 감소 (40.0%→29.5%)	△1
동 아	-	-	-	동아건설산업(주)	토목건설업	지정제외	
				대한통운(주)	도로화물운송업	지정제외	
				(주)대전프로축구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지정제외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증 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동아	-	-	-	(주)동아실리콘 스튜디오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업	지정제외	△16
				(주)동아 텔레비전	방송업	지정제외	
				대둔산레저 (주)	운동설비운영업	지정제외	
				대한용역(주)	육상운수 유지서비스	지정제외	
				대한통운 국제물류(주)	기타 운수관련업	지정제외	
				대한통운 터미널(주)	보관 및 창고업	지정제외	
				동아 관광개발(주)	숙박업	지정제외	
				동아 엔지니어링(주)	건축 및 엔지니어링	지정제외	
				동아종합개발(주)	부동산임대업	지정제외	
				마산항4부두 운영(주)	보관 및 창고업	지정제외	
				울산항만 운영(주)	보관 및 창고업	지정제외	
				동이주택 할부금융(주)	금융 관련 서비스업	지정제외	
				공영토건(주)	건설업	지정제외	
효성	이지스 벤처그룹(주)	인터넷사업	회사설립 (100%)	-	-	-	2
	홍진데이터 서비스(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회사설립 (100%)	-	-	-	
대림	(주)이케임즈	인터넷게임사업의	주식취득 (0%→32.5%)	-	-	-	1
에쓰- 오일	-	-	-	에쓰-오일(주)	운유정제처리업	지정제외	△2
				범이석유(주)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지정제외	
제일 제당	(주)한국케이블TV 마산방송	종합유선방송업	주식취득 (0%→97.8%)	-	-	-	1
영풍	케이지 엔지니어링(주)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	회사설립 (100%)	-	-	-	1
계	7			19			△12